

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

< 요약 >

○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

- (공모규모) 170억 원(전년 동일)
- (공모유형) 4개
 - 도정참여형(40억 원), 도-시군연계형(40억 원), 청년참여형(50억 원), 생활안전형(40억 원)
 - 주민자치형 중단(시군 자체 추진), 전년대비 공모총액은 같으나 유형별 공모액 조정
- (공 모 외) 도민참여플랫폼 등을 통한 주민참여적 사업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
- (홍보·교육) 도민예산학교 등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·교육 실시
- (내 실 화) 제안사업 다각적 검토 및 충분한 숙의·토론 추진

○ 일반참여예산사업 운영

-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경남도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참여 제고

○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: 위원회(105명, 7개 분과위), 연구회(12명)

○ 주민참여예산 사업점검단 운영을 통한 평가 및 환류



경 상 남 도
(예산담당관)

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

예산의 모든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임

I 개 요

□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)
- 「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□ 운영개요

- 참여방법
 - 공청회, 간담회, 설문조사, 사업공모 및 도민 투표를 통한 참여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등
- 주요내용
 - 주민 제안사업 공모 : 연중 ※ 집중 공모기간 : 4 ~ 5월
 - 사업점검단 운영 및 주민의견서 작성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: 105명, 임기 2년(연임 가능)
- 추진일정

사업공모	타당성검	예산기구심	총회 (도민투표)	주민의견서 작성	사업점검
전도민	사업부서	분과위원회	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도민	주민참여 예산위원	사업점검단 사업부서
홈페이지, 방문·우편 등	법령·조례,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	우선순위· 총회 상정사업 선정	온라인 투표 및 최종 선정	도의회 제출	주민참여예산 사업 점검
4~5월	4~6월	6~7월	8월	9~11월	9~12월

II

'22년 추진 실적

□ 추진 경과

-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수립 : '22. 2. 28.
- 주민참여예산 집중 제안 : '22. 3. 2. ~ 5. 12.
-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(총 18회) : '22. 4 ~ 10월

총횟수(회)	위원회	분과위원회	운영위원회	연구회	사업점검단
18	1	9	5	2	1

- 도민예산학교 운영(총 15회, 294명) : '22. 4. 27. ~ 12. 9.
- 도민투표(최종 사업 선정 '22. 10. 17.) : '22. 9. 30. ~ 10. 9.
- 도민투표 결과 : 1,025명(도민 989, 주민참여예산위원 36)
- 도의회 예산안 심의·의결 : '22. 11. 1. ~ 12. 15.
- 119개 사업, 8,678백만 원(도비 2,769, 시군비 5,909)
(단위 : 백만 원)

유형		공모규모			최종 선정결과				비고
		계	도비	시군비	계		도비	시군비	
					사업 건수	금액			
총계		17,000	10,700	6,300	119	8,678	2,769	5,909	
도 민 주 도 형	도정참여형 (40억)	4,000	4,000	-	1	100	100	-	
	도-시군 연계형 (50억)	5,000	1,500	3,500	32	4,944	1,483	3,461	
	청년참여형 (20억)	2,000	2,000	-	5	730	324	406	
	생활안전형 (20억)	2,000	2,000	-	5	218	65	153	
주민자치형(40억)		4,000	1,200	2,800	76	2,686	797	1,889	

"활기찬 경남, 행복한 도민" 실현을 위한 공모 유형 조정

○ 공모규모 : 170억 원(전년 동일)

- 공모 총액은 전년 대비 동일하나, 유형별 공모규모 조정
- (청년참여형 확대) 50억 원(전년대비 30억 원 증액)
 -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
 - 청년일자리, 창업, 교육, 창작활동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사업 발굴
 -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
- (생활안전형 확대) 40억 원(전년대비 20억 원 증액)
 - 생활 안전분야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해당 분야 사업 수요 증가
 -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남 구현에 기여

○ 공모유형 : 5개 → 4개

- 읍면동 대상 주민자치형* 중단, 도민주도형 확대
- 주민자치형은 전 시·군 자체 추진 중이며, 시군 제도 운영 정착(성숙기)
- 생활안전, 청년참여 등 도 역할에 맞는 사업유형에 집중·확대

* 주민자치형은 「18년 행안부 지침」 따라 주민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광역시, 자치도, 시·군에서 시작, 도 단위에서는 경남·충남만 주민자치형 추진(제도 활성화 목적)

유 형		예산액
계		170억 원
도 민 주 도 형	도정참여형 (도 직접, 100%)	40억 원
	도-시군연계형 (도 30%, 시군 70%)	50억 원
	청년참여형 (도 30~100%, 시군 0~70%)	20억 원
	생활안전형 (도 30~100%, 시군 0~70%)	20억 원
주민자치형 (도 30%, 시군 70%)		40억 원

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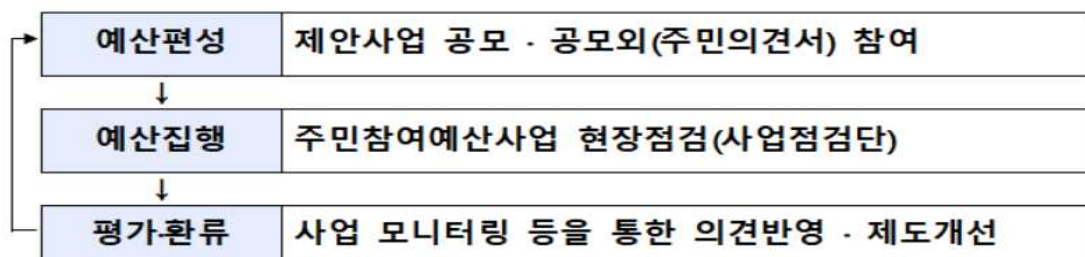
유 형		예산액
계		170억 원
도 민 주 도 형	도정참여형 (도 직접, 100%)	40억 원 (-)
	도-시군연계형 (도 30%, 시군 70%)	40억 원 (△10)
	청년참여형 (도 30%, 시군 70%)	50억 원 (↑30)
	생활안전형 (도 30%, 시군 70%)	40억 원 (↑20)
주민자치형		- (△40)

2 공모사업 외 주민참여적 사업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

- 도민참여플랫폼 등 공모 외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·반영
 - 해당 실과에서 예산에 직접 반영(예산편성 한도 없음)

3 사업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

- (맞춤형 컨설팅단 구성·운영) 사업 제안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제안사업 질 향상으로 채택률 제고
 -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
 - 취약계층 지원 및 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
 - 운영방법 : 도민예산학교 활용, 컨설팅 신청에 따른 지원
- (예산 전 과정 참여 활성화)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참여 보장,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



- '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' 연계하여 지속적 평가·환류 모니터링 실시
- (도민투표율 제고)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도민투표율 제고, 주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채택
 - 투표방법 및 상정사업 표기 간소화로 투표 편의성 제고
- (제안 참여 인센티브 제공)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우수제안 선정, 제로페이 상품권 지급

4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·교육

- (맞춤형 홍보·교육 강화)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한 변화 및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홍보를 보완·강화하여 실질적 참여 촉진
 - 제도개선 사항, 주민참여 절차,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변화 등
 - 학교, 주민자치회 등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·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(교육청, 시군 등 협업)
- (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) 도민예산학교 과정 중 온라인·모바일 등을 활용한 동영상 교육 제공 등 주민편의 도모

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

- (제안사업 숙의·토론 심화) 필요 시 제안자 설명, 현장 확인, 사업부서 검토 등 충분한 숙의·토론 과정 진행
 - 도 재정 프로세스 및 여건 설명 등 '주민참여예산위원-소관부서-예산실' 간 종합적 논의 심화
 - 도 의회 심의 대비, 사업 선정 후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
- (협업강화) 제안사업 다각적 검토 및 제도 운영 관련 협업 추진
 - 소관 부서, 교육청, 시군,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연계협업하여 제도 운영
 - 예산담당관 → 소관 실국본부 분류 → 소관부서 지정
- (우수사례 공유)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격차 해소, 예산연구회를 통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

IV

세부 운영 계획

1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

□ 규 모 : 170억원

(단위 : 억 원)

합계	도민주도형			
	도정참여형	도-시군연계형	청년참여형	생활안전형
170	40	40	50	40

□ 참여자격 : 경남 도민

※ 도 및 시.군의 공무원, 산하 출자.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

□ 참여방법

○ 공 고 : '23. 4월

○ 집중공모 : '23. 4 ~ 5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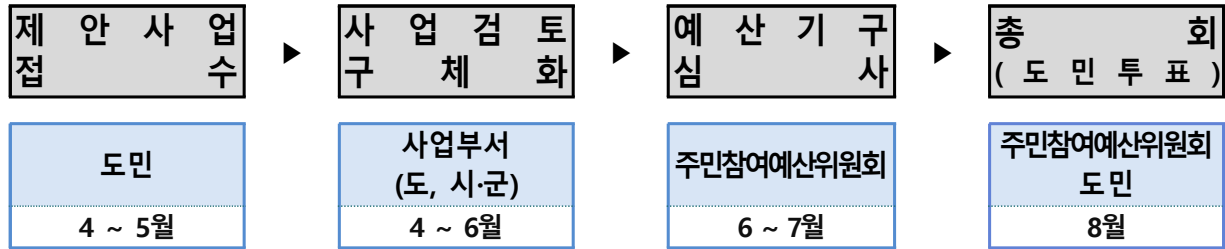
※ 연중 상시접수, 집중공모기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년도 심사

○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/방문(제안신청서 작성·제출)

선정 불가 사업 공통 기준 안내

-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
-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, 계속사업 및 기 시행(추진) 중인 중복사업
-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
-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
-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
(단,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)
-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-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
 - 특정 개인·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
 -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기획, 인사, 감사,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,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

□ 추진절차



□ 유형별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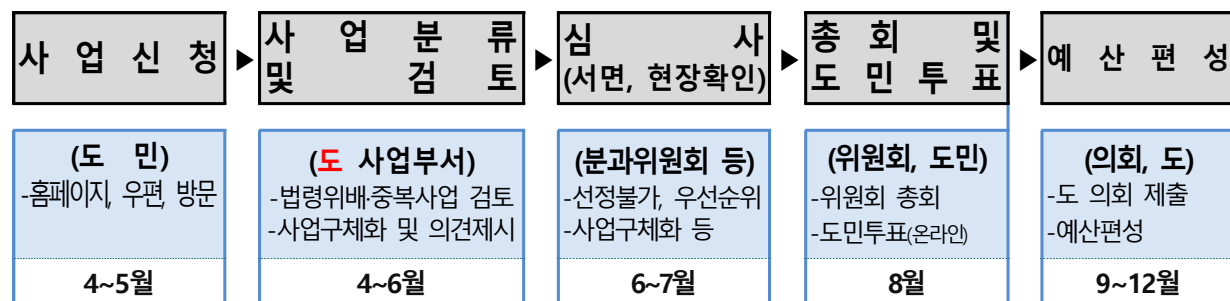
구분		사업내용	참여방법
도민 주도형	도정참여형 (40억 원)	- 도비 100% 투자 대상 사업(도 직접사업) -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-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	도민제안
	도-시군 연계협력형 (40억 원) (도 30% 시군 70%)	-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-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- 공모,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- 시군 소관 업무	
	청년참여형 (50억 원) (도 30% 시군 70%)	- 일자리, 문화예술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	
	생활안전형 (40억 원) (도 30% 시군 70%)	- 범죄예방, 사회적 약자 보호,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·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	

① 도정참여형(40억원)

- (단위사업규모) 일반사업 5억 원,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
- (대상사업)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
기여할 수 있는 도 소관 사업

- 도비 100% 투자 대상 사업(도 직접 사업)
 - ※ 특정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(시범사업 등)은 시군비 매칭 가능
 -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
 -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
 - 일자리, 안전, 경제, 복지, 문화관광, 환경, 도시재생 등
 - ※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, 도-시군연계협력형으로 이관

- 제안사업 접수 후 도 소관부서 검토,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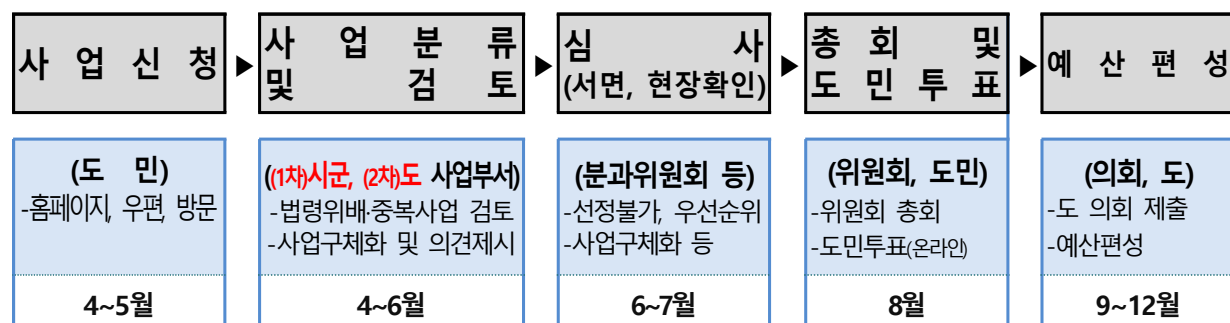


② 도-시군연계협력형(40억원)

- (단위사업규모) 일반사업 3억 원, 행사성 사업 5천만 원 이내
※ 사업별 최대 30%까지 도비 지원,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: 5억원(총액 기준)
- (대상사업) 시군 단위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시군 소관 사업

-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
- 공모,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
-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
-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

- 제안사업 접수, 시군(1차) · 도(2차) 소관부서 검토, 시군 주민참여 예산기구 우선순위 선정, 분과위원회 심사 후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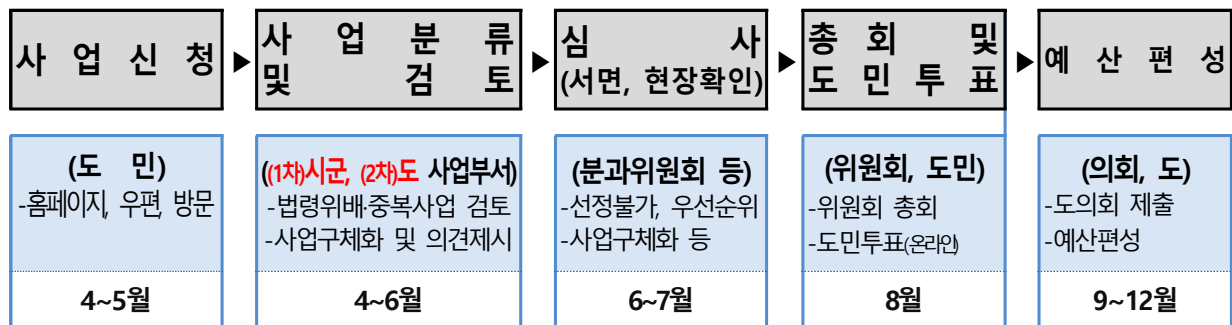
③ 청년참여형(50억원)

- (단위사업규모) 일반사업 3억 원, 행사성 사업 5천만 원 이내
※ 사업별 최대 30%까지 도비 지원,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: 5억원(총액 기준)

- (대상사업)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

- 청년 일자리 창출, 창업·창작 활동 지원 사업
-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·복지 지원 사업 등
- ※ 도비 100% 투자대상사업(도 직접사업)은 도정참여형 진행 절차 적용

- 지역대학, 취업연수생, 경남청년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청년 사업 집중 발굴
- 제안사업 접수, 시군(1차) · 도(2차) 소관부서 검토, 시군 주민참여 예산기구 우선순위 선정, 분과위원회 심사 후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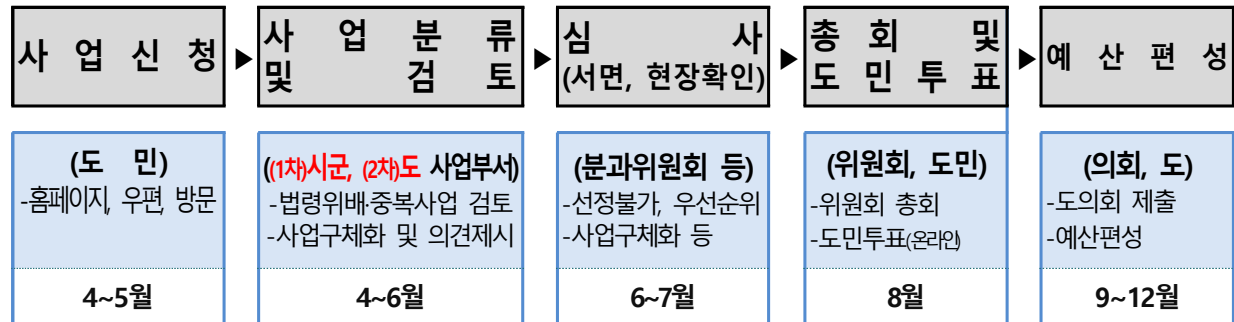
④ 생활안전형(40억원)

- (단위사업규모) 일반사업 3억원,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
※ 사업별 최대 30%까지 도비 지원,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: 5억원(총액 기준)

- (대상사업) 범죄예방, 사회적 약자 보호,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치안 ·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

-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사업
-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보호활동 사업
- 마을치안 ·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예방 사업 등
- ※ 도비 100% 투자대상사업(도 직접사업)은 도정참여형 진행 절차 적용

-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등 유관 기관·단체를 활용하여 생활안전 사업 집중 발굴
- 제안사업 접수, 시군(1차)·도(2차) 소관부서 검토, 시군 주민참여 예산기구 우선순위 선정, 분과위원회 심사 후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



2 일반참여예산사업 운영

□ 개 요

- 관련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제3항
- 목 적 :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경남도 일반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참여도 제고
- 참여대상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도민 등
- 대상사업
 - '24년 도 주요 재정사업
 - 도 정책사업 중 30억 원 이상 사업 및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
 - 1억 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,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

□ 운영방법

-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의견서 작성 후 도의회 제출
- 기타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, 간담회, 예산연구회 활동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

3 기타 세부 운영사항

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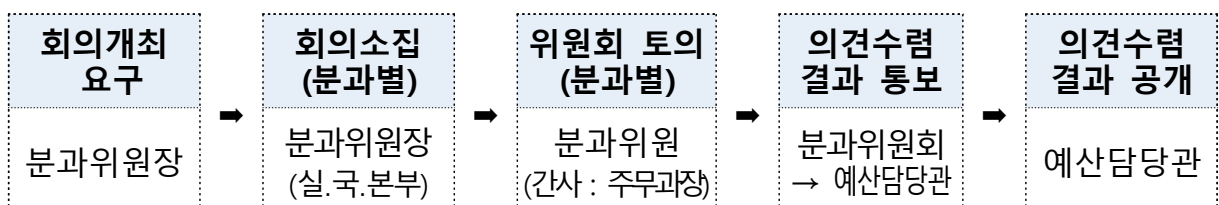
□ 개 요

- 위원수 : 105명(당연직 16, 위촉직 89)
※ 『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』 제11조(위원수 : 100명 이상 150명 이하)
- 임 기 : 2년('23. 3. 1. ~ '25. 2. 28.)
- 임 원 : 3명(공동위원장(2)*, 부위원장(1), 간사(예산담당관))
* 공동위원장 2명(행정부지사, 위촉직 중 1명 호선)
- 기 능
 -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
 -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
 -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

□ 분과위원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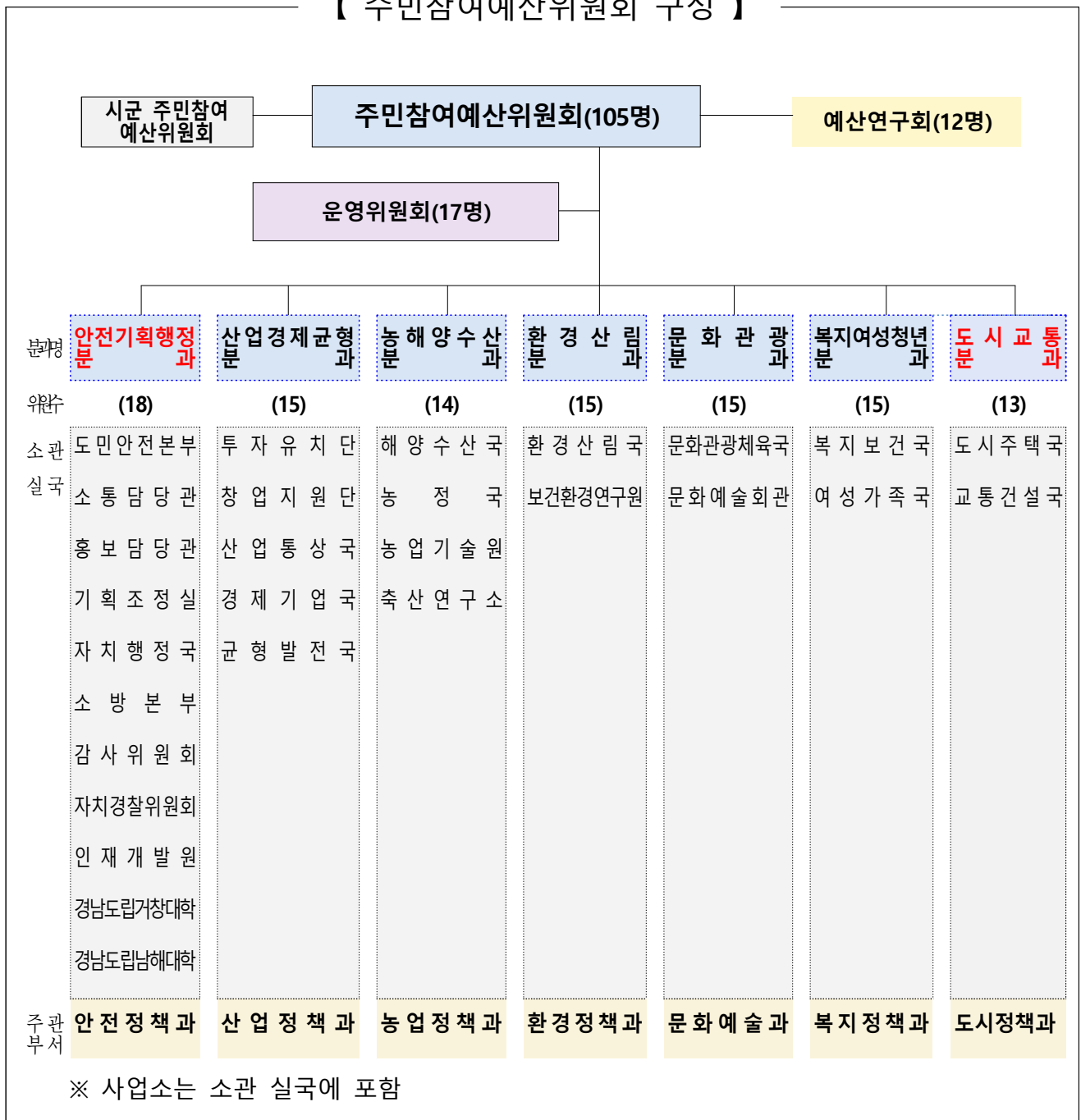
- 임 원 : 분과별 2명(위원장, 부위원장), 분과위원 중 호선
- 기 능
 - 분야별 현 실태 의견 개진,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
 -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
 - 참여예산사업 현장방문·확인 및 참여예산사업 사업점검 등

○ 운영절차



○ 구 성

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】



□ 운영위원회 운영

○ 구 성 : 17명(위원장 2, 부위원장 1, 각 분과 위원장·부위원장 14)

○ 기 능

- 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
-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

-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과 관련된 최종 의견서 작성
-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 등
 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
 - ※ 소관부서 지정이 곤란할 정도로 명백히 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한 사업에 관한 처리 방안 논의 등

☐ 전문성 제고 방안

- 주민참여예산위원 도민예산학교 교육 필수 이수
-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및 예산연구회 위원 자문을 통한 심도있는 숙의절차 운영
- 교육 및 회의 참석율 저조(50% 이하) 위원 차기 위원 선정 시 연임대상에서 제외

☐ 청렴성 제고 방안

-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이권 개입, 청탁 등 부정사례 발견 시 해촉
 - ※ 해촉사유 : 직무태만, 비밀누설, 민원야기, 품위손상 등
-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청렴서약서 작성
- 본인이 제안사업 신청자일 경우나 관련자일 경우 심사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기피·회피·제척

☒ 2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성화

- 인 원 : 12명(대학교수 4, 시민단체 4, 민간전문가 4)
- 기 능
 -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
 -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, 개선방향
 -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
 -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
 - 그 밖에 지역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 운영

○ 기 간 : '23. 4 ~ 12월

○ 대 상 : 일반도민(기관단체 포함), 주민참여예산위원, 주민자치(위원)회 등

○ 기 능

- 도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인식 제고, 주민참여 기회 확대
- 집단지성을 활용한 도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및 제안사업 발굴
-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예산학교 이수를 독려하여 운영 실질화
- 제안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구체화 및 질 제고

○ 운영계획 ※ '23년도 계획 : 교육 20회, 컨설팅 40회

- 도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'찾아가는 예산학교' 운영
- 여성청년단체, 커뮤니티, 학교 등 기관·단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
- 도민 제안사업 채택률 및 질 제고를 위한 '맞춤형 컨설팅' 지원

④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

○ 기 능

- 예산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및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
- 주민참여예산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로 업무처리 효율 향상, 도민 알권리 충족

○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전 과정 전산화 및 투명 공개
- 쌍방향 소통시스템 운영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
- 제안사업 신청, 신청내역 확인, 검토결과 공개, 도민평가, 도민소통방 등 주민 의견수렴 및 피드백 기능 제공
- 예산데이터 시각화(인포그래픽)를 통해 알기 쉬운 예산 정보 제공

⑤ 주민참여예산 사업점검단 운영

- 대상사업 : '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(119개 사업, 87억 원)
- 추진시기 : '23. 9월 ~ 12월(서면 + 현장확인)
- 사업점검단 구성 :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, 도민감시단 등 60여명
 - (도민주도형) 도 주민참여예산위원,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 합동 점검
 - (주민자치형)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, 지역주민 등 시군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
- 주요내용 : 사업 추진상황, 애로사항, 민원사항 등 사업점검
 - (서면심사) 사업설명서, 계획서 등을 활용 분과위별 사업점검
 - (현장확인) 서면심사 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선정, 실시
 -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, 예산낭비 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, 사업완료 여부, 사업 효과성 등 중점 모니터링
 - 직접 현장방문 후 결과보고서 작성(종합의견, 사진 등 첨부)
 - 문제점 지적 위주 현장 방문 지양, 우수사업 발굴 위주로 선정하여 현장 확인
 - (결과조치) 사업점검 결과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등

⑥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환류

- 우수 운영 모델 발굴 등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 모색
-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기회 마련
- 우수사례, 토론회, 완료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의견 반영하여 지속적 제도개선

V

향후 계획

- '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: '23. 3월
- 주민제안사업 공모 · 선정 : '23. 4 ~ 12월
 - 집중공모 : '23. 4 ~ 5월
 -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: '23. 4 ~ 6월
 -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 : '23. 6 ~ 7월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: '23. 8월
 - 예산안 편성 : '23. 9월
 - 도의회 심의·의결 및 사업 확정 : '23. 12월
- 도민예산학교 운영 : '23. 4 ~ 12월
- 주민의견서 작성 · 제출 : '23. 9 ~ 11월
- 주민제안사업 현장 점검 : '23. 9 ~ 12월
-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공유 : '23. 12월

VI

행정 사항

구 분	협 조 사 항
전부서	○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- 대규모 투자사업,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 청취 ○ 도민 공모사업 검토 협조(법률위배·중복여부 검토, 사업비 재산정, 구체화, 우선순위 등) *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○ 선정사업 예산안 편성시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 ○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 ○ 단체(기관) 간담회·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조 ○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협조
분과위원회 주관부서	○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- 사업계획 공유, 심사, 토론, 회의록 작성, 결과 보고 등

구 분	협 조 사 항
행정과 인사과	○ 주민참여예산사업 유공자 및 우수제안자 표창(행정과, 인사과) -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표창 - 주민참여예산 공모 우수제안자(민간) 표창
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	○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협조 - 언론매체(방송, 신문 등) 보도자료 제공 - 뉴미디어(홈페이지, SNS, 블로그 등), 경남공감 등 활용 홍보
정보통신담당관	○ 사업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, 현장 투표 지원(PC, 인터넷)
청년정책과	○ 청년참여형 사업 발굴 지원
도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	○ 생활안전형 사업 발굴 지원
시군	○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○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공모사업 참여(홍보) 협조 ○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○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도와 연계 추진 - 도 사무, 시군 사무에 대한 제안사업 접수, 상호 연계처리 - 도민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○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 구성 및 활성화 협조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예산기구 구성(법적 의무화) -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 -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·감시활동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로 예산 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 ○ 주민자치형 사업 시군 주도적 운영

- 붙임 1. 도민주도형 공모신청서(서식) 1부.
2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평가표(서식) 1부.
3. 2024년 예산편성 주민의견서(서식) 1부.

참고1

주민참여예산 추진 연혁 및 실적

- 2009년 : 「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」 제정
- 2010년 ~ 2017년 : 분야별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개최
- 2011년 : 도민예산학교 운영
- 2012년 : 「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공포
 - * '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'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
 - *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2012. 12월)
- 2018년 : '19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(규모 : 52억원)
- 2019년 : '20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(공모규모 확대, 130억원)

- 경남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이관(예산담당관실→사회혁신추진단)
- ⇒ 주민제안사업 공모규모 2배 확대, 도민역량 강화와 관심유발을 위한 도민예산교육 확대(8회→20회)

- 2020년 : '21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(창년참여형 신설,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)
- 2021년 : '22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(공모규모 확대, 170억원)
 - * 기존 지역주도형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변경, 사업비 대폭 확대
('20년 10억 원<지역주도형> → '21년 60억 원<주민자치형>)
 - * 「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공포(11.4.)
- 2022년 : '23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
 - * "생활안전형" 공모유형 신설, 맞춤형 컨설팅단 구성
 - *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(사회혁신추진단 → 예산담당관)

※ 최근 5년간 추진 실적

편성연도	공모규모 (백만원)	접수		예산반영(접수대비)	
		건	금액(백만원)	건	금액(백만원)
2019년	5,200	121	18,868	61(50%)	5,062(27%)
2020년	13,000	352	82,209	114(33%)	12,461(15%)
2021년	13,000	456	96,540	111(24%)	14,554(15%)
2022년	17,000	474	85,628	157(33%)	15,267(18%)
2023년	17,000	461	77,834	119(26%)	8,678(11%)

< 도정참여형 >

① 사업신청 '23. 4 ~ 5월

- 신청자격 : 경남도민
- 신청내용 : 사업신청서(사업개요, 예산규모, 현장사진, 기대효과 등)
- 신청방법 :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

② 제안사업 분류 '23. 4 ~ 5월

- 사업접수와 동시에 소관부서로 배분, 법령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
- 청년참여형, 생활안전형 중 도비 100% 투자대상사업(도 직접사업)은 도 소관 부서로 배분, 도정참여형 절차에 따라 진행

③ 도 사업부서 검토 '23. 4 ~ 6월

- 검토내용
 -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, 중복사업 여부,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
 -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
 -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

④ 분과위원회 등 심사 '23. 6 ~ 7월

[심사기준]

- ▶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
- ▶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
- ▶ 도정과제, 도지사 공약사항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
- ▶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

• 서면심사

- 제안서,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시급성, 타당성 여부 심사
-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*(사업접수건수,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) 120% 범위내 사업 선정, 총회 상정

※ 심사 시 예산담당관실 참여하여 의견 제시

-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, 통폐합

* (통폐합 사업 한도액) 일반사업 7억 원, 행사성사업 2억 원

- 수혜범위가 1개 시군으로 제한되는 경우 가급적 총회 상정 지양

* 단, 시범사업은 가능

• 현장확인(필요시)

-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
- 현장확인 결과보고서(사진첨부) 작성 후 사업 선정

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'23. 8월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
- ※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

⑥ 예산안 편성 '23. 9 ~ 12월

< 도-시군연계형, 청년참여형, 생활안전형 >

① 사업신청	2023. 4 ~ 5월
• 신청자격 : 경남도민 • 신청내용 : 사업신청서(사업개요, 예산규모, 현장사진, 기대효과 등) • 신청방법 :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	
② 제안사업 분류	2023. 4 ~ 5월
• 사업접수와 동시에 해당 시군으로 배분, 법령 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	
③ 시군(★) 사업부서 검토·제출	2023. 4 ~ 6월
• 검토내용 -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, 중복사업 여부, 시군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-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※ 시군 사업부서 검토시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회 -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※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자리도 법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	
▶▶▶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	
• 추진방법 : 서면심사 → 현장확인 → 본심사(도정참여형과 동일)	
④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	2023. 6월
• 검토내용 -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, 중복사업 여부, 사업비 재검토 - 유사사업 통폐합(통폐합 사업 한도액: 일반사업 5억 원, 행사성 사업 1억 원),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등	
⑤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	2023. 6월
• 우선순위 선정 결과 제출 - 시군 및 도 사업부서 검토를 거친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하여 제출	
⑥ 분과위원회 등 심사	2023. 6 ~ 7월
[심사기준] ▶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및 타 시군 시너지 효과 유발 사업 우선 ▶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▶ 도정과제, 도지사 공약사항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▶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	
•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- 제안서, 시군 사업부서 및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 심사 -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*(사업접수건수,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) 120% 범위내 사업 선정, 총회 상정 ※ 심사 시 예산담당관실 참여, 의견제시 -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, 통폐합	
⑦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	2023. 8월
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※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 ※ 투표결과에 따라 사업선정하되, 시군별 편차가 극심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	
⑧ 예산안 편성	2023. 9 ~ 12월

신청인 정보			
성명		성별	☐ 남 / ☐ 여
주소			
연락처		이메일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(상담, 문의에 대한 답변, 우수제안자 선정 등) ○ 수집항목 : 신청인(단체명, 대표자 성명), 연락처(휴대폰 번호), 주소, 이메일 ○ 보유·이용기간 : 2년(단, 예산편성 사업은 5년) ○ 동의 거부 권리 안내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(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됩니다.) 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☐ (체크)			
제안사업 내용			
분야	☐ 안전.도시.교통 ☐ 산업.경제.균형 ☐ 농.해양.수산 ☐ 환경.산림 ☐ 문화.관광 ☐ 복지.여성.청년 ☐ 기획.행정 ☐ 기타()		
사업명			
사업위치	☐ 경남도 전체	☐ 시군 사업 (경남 시·군 도로명)	
소요예산	천 원	사업기간	2023.00.00 ~ 2023.00.00(1년)
사업개요	☐ 사업명(사업내용 상세 기재) ※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○ (사업목적 및 배경) ○ (사업대상 또는 수혜자) ○ (사업량) ○ (추진방법) ○ (사업위치) 현장사진 등 첨부 ○ (소요예산) 금 원 - (산출내역) ○ (추진일정) ○ (기대효과)		
컨설팅신청	☐ 신청 ☐ 미신청 ※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드립니다. (단,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		
2023년 월 일			
경상남도지사 귀하			

붙임2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평가표

○ 위원회명 :

○ 사 업 명 :

○ 사업평가표 총점 :

항 목	평가지표	배점							점수
		1	2	3	4	5			
필요성	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	그렇다	
시급성	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?								
공공성	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?								
효과성	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?								
목표 달성도	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?								
수혜 대상	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?								
성평등	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								
사업비 적정성	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?								

○ 기타 의견

2023년 월 일

주민참여예산위원

성명

(서명)

☐ 사 업 명 :

☐ 위 치 :

☐ 사업의 필요성(현안·불편 사항) 또는 기대효과

○

○

☐ 사업내용

○

○

※ 기타 참고사항

- 사 업 량 :

- 추정사업비 :

☐ 위치도

※지도, 약도로 정확한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요망

☐ 의견서 제출자

○ 주 소 :

○ 성 명 : (전화번호)